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
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
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고,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표준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
별법」 이 제정(법률 제19954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나.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 제품 산업표준을 제정·보급 시 인증비용 등

지원의 대상을 규정(안 제3조)

다.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4조)

- 1)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련 서식 및 경영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

라. 계약학과 설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5조)

- 1)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

마.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규제개선의 신청 방식 구체화(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제정안이므로 생략

2) 입법예고(2024. 3. 14. ~ 4.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나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자율주행자동차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의 재생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그밖에 녹색기술, 정보통신기술, 지능정보기술 또는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융합 기술 등을 활용해 품질,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킨 자동차

② 법 제2조제2호 마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의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청정생산기술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의 녹색기술
 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의 기후변화대응 기술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7.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 제3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2. 법 제7조제2항제4호의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인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3조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조직·설비·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3.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계약학과등의 설치 지원)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1부(사립학교의 경우만 제출한다)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에 관한 사업 계획서 1부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6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입력 또는 제출한 자는 입력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플랫폼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규제개선 신청 등)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개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

[별지 제3호 서식]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규제개선 요청서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1]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제4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기업명		설립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업종		주생산물	
자산총계	백만원	연구개발비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기업 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분야
종업원 수	총원()명 석·박사()명 학사 이하()명		
담당자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회사 홈페이지

[미래차 사업 매출액 명세] (단위: 백만원)

매출 발생 기준 연도(전년도)				기업의 총매출액(A)	
미래차 부품				미래차 부품 매출액	
연번	품목	표준산업 분류코드	HS 코드	국내매출액	수출액
1					
2					
3					
⋮					
미래차 부품 매출액 총계(B)		총매출액 중 미래차 부품 매출액 비율(B/A)		%	

[미래차 사업 연구·인력개발비 명세] (단위: 백만원)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기준 연도(전년도)			
미래차 부품 사업 연구개발비(C)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	미래차 부품 사업 인력개발비(D)	전체 기업 인력개발비
미래차 부품 사업 연구·인력개발비 총계(E=C+D)		총매출액 중 미래차 부품 연구·인력개발비 비율(E/A)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래자동차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동의서

본 기업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전문기업 지정서(제4조 관련)

제 호

미 래 자 동 차 부 품 전 문 기 업 지 정 서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소 재 지 :

사업장 소재지 :

위 기업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3]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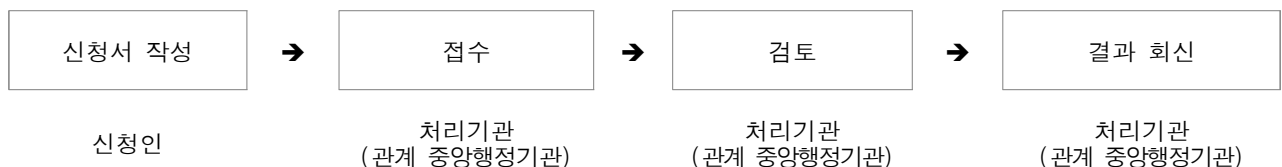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 1부(사립학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4]

규제개선 요청서 (제7조 관련)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5일 이내
------	------	-------------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신청기업 개요	※ 규제개선 관련 사업에 관해 기술하십시오.
------------	--------------------------

개선대상 규제	규제내용(관련 법령)
	규제 문제점
	규제개선 방안
	그 밖의 참고사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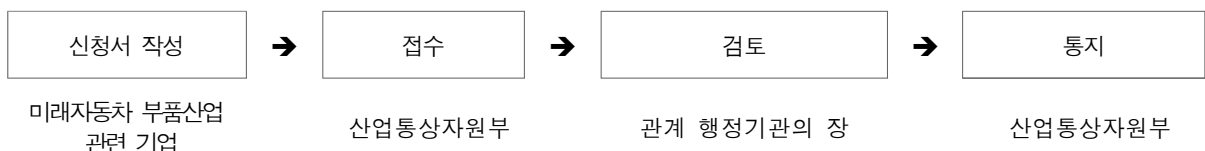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